

부속사업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9호선 부속사업의 계약 및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가 시행하는 부속사업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서 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부속사업”이라 함은 회사 시설내 상가(점포), 편의시설(편의점, 자동판매기, 물품보관함, 현금자동화기기), 광고사업 등의 일체를 포함한다.
- ② “9호선 시설내 영업”이라 함은 역사 등 회사 시설물 내에서의 영리행위 일체를 말한다.
- ③ “사업자”라 함은 회사와 부속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 ④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자에게 채용된 고용원과 사업체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⑤ “임대사업”이라 함은 사업자가 회사의 역사내 시설물을 사용 및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대가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⑥ “상가(점포)”라 함은 회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내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 ⑦ “편의시설”라 함은 회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내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매표) 편의점, 자판기(캔, 커피, 위생, 스낵), 물품보관함, 현금자동화기기(ATM기기)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 ⑧ “광고사업”이라 함은 회사 시설물을 활용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제3자의 광고를 대행하게 하는 대가로 회사에 일정액 또는 매출액에 연동하여 광고료를 납부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⑨ “제휴사업”이란 회사와 타 기업 및 단체간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생산·기술·마케팅·판매 등에 관하여 협약을 맺고, 공동투자·위탁생산·위탁판매·판매망 공유·기술정보 교환·공동개발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⑩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우선협상대상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비치하는 가액을 의미한다.
- ⑪ “계약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사업자가 계약기간 동안 계약이행의 보증을 담보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 ⑫ “임대보증금”이라 함은 사업자의 사용료 및 시설관리유지비 등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 ⑬ “사용료”라 함은 부속사업 운영에 대한 대가로 사업자가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 매출 수수료, 광고료 등을 총칭한다.

제2장 계약절차

제4조(계약의 원칙)

- ① 계약은 회사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하여 체결한다.
- ②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 ③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사항 또는 조건을 규정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계약의 방법)

- ① 회사가 부속사업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단,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치는 제한경쟁입찰,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는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협상)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② 경쟁입찰은 이(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단, 입찰의 특수성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단독으로 응찰한 경우, 회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할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성립된다.

제6조(예정가격의 산정)

경쟁입찰(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포함) 또는 수의계약 등에 따른 부속사업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할 경우 해당 목적물에 대한 예정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제7조(예정가격 산정기준)

- ① 회사는 타 기관 사업사례 조사 또는 해당사업의 시장상황 원가조사 및 사업타당성 용역결과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한다.
- ② 예정가격에 대한 산정 기준이 없는 경우, 회사는 예정가격을 해당사업의 직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제8조(입찰공고)

- ① 회사가 경쟁입찰을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홈페이지 게시 또는 일간신문 게재 등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이나 해당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입찰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가. 경쟁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나. 세부조항이나 설명을 공시 또는 설명하는 장소
 - 다. 경쟁 입찰의 장소와 일시
 - 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마. 사용료 납부 및 산정에 관한사항
 - 바.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 사. 우선협상대상자의 결정방법
 - 아.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입찰 설명회)

회사가 부속사업 입찰 공고 시, 회사는 별도의 입찰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는다. 단, 사업의 특성상 입찰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입찰참가신청)

- ① 회사 부속사업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서 정한 별첨1의 구비서류(입찰참가신청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 가. 계약 이행에 있어 고의로 조작 또는 부정행위를 한 자
 -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한 자
 - 다. 자격요건 및 기타 계약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라. 회사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한을 받은 자

마. 관계법령 위반으로 영업 제한을 받은 자

제11조(입찰보증금)

- ①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으로 입찰금액의 일백(100)분의 오(5)이상을 입찰공고에서 지정하는 기일까지 회사에 납부 하여야 한다.
- ② 입찰보증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가. 현금
 - 나.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다. 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회사의 보험증권
- ③ 입찰보증기간은 아래와 같다.
 - 가.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 나.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부터 삼십(30)일 이후 일 것
- ④ 우선협상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입찰의 연기)

- ① 회사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입찰 설명회)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입찰 설명회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1항의 입찰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음을 입찰공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3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이(2)통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권을 겸하거나 이(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5.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6.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회사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자의 입찰
7. 입찰참가 신청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에도 포함한다.)
8. 입찰참가신청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9. 회사 예정가격(비공개)의 팔십(80)% 미만 된 입찰(단독 입찰 포함)

10.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제14조(우선협상대상자 및 계약체결)

- ① 본 규정 1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회사가 정한 예정가격 이상 최고점 또는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한다.
- ② 입찰결과 최고점 또는 최고가격이 동일한 경우, 초기 해당년도 사용료를 높게 제시한 입찰참가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한다. 또한 초기 해당년도 사용료가 동일한 경우, 회사는 동일한 초기 해당년도 사용료를 제시한 이(2)인 이상의 입찰참가자에 한하여 추첨을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 ③ 회사는 개봉된 입찰참가 신청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고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지체없이 적격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 ④ 회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로부터 일십사(14)일 이내에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한다. 단,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협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내지 계약체결 결렬 시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

- ① 경쟁입찰에 있어 이(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제13조에 의거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차순위 협상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사업을 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② 1항의 경우, 입찰공고 기간을 오(5)영업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 ③ 재공고 입찰의 경우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은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④ 재공고 시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30을 최저한도로 하여 예정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체결)

- ① 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 수만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당사자가 각 일(1)부씩 보관해야 한다.
- ② 부속사업 관련 계약서 작성시 최소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가. 계약명
 - 나. 계약금액 및 부가가치세 관련 사항
 - 다. 계약이행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관련 사항
 - 라. 계약 상대자의 권리 및 의무 관련 사항

마. 계약 해지에 대한 사항

바.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사항

사. 계약기간 종료 후 목적물 명도 관련 사항

아. 계약기간 및 운영개시일 관련 사항

- ③ 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대표이사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계약방법

제17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

- ① 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위치, 면적(수량), 업종 등의 확정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계약
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입찰참가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평가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제안서 평가와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 경우 사업제안서 평
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입찰 전에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회사가 제3항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로서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가 이(2)인 이상인 때에는 회사가 그 적격자에게 가격
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제한경쟁 입찰)

- ① 회사가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해당 사업목적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제한
- 나. 해당사업에 필요한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 보유여부
- 다. 계약이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무상태
- 라. 회사 대표이사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가자격의 제한
- ② 제1항 각호의 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회사는 사업의 목적, 계약이행의 난이도, 사업

규모의 대소, 투자자금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가호에 의한 실적제한의 경우 입찰참가자의 규모 또는 량(운영기간 등)에 의한 제한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격상 규모(량)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다호에 의한 제한의 경우 자본금, 자산총액, 신용상태 등에 의한 제한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사업의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재무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19조(지명경쟁입찰)

- ① 회사가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풍부한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나. 본 규정 제20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지명경쟁에 부칠 수 있다.
- ② 회사의 이익을 고려하여 삼(3)인 이상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경쟁에 참가할 의사를 확인하고, 이에 참가할 것을 승낙한 자가 이(2)인 이상 이어야 한다.

제20조(수의계약)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가. 불특정 다수인과 수시로 체결하는 계약
 - 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한 장소 및 시설물 제공 등의 계약
 - 다. 회사의 수익사업을 위해 계약기간이 육(6)개월 이내의 경우
 - 라. 유찰이 이(2)회 이상 지속되어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 마. 제휴사업으로서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바. 예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총액기준)
- ②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가. 부속사업 관련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사업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회사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나. 가호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세부 심사기준에 따르며, 회사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제안자의 자유제안에 의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회사가 사업자에게 개발대상 면적 (또는 위치)등이 상·하한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안 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참가한 자에 한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마. 나호의 세부심사기준은 회사가 해당사업에 맞게 별도로 정한다.

제4장 계약의 체결 및 보증

제21조(부속사업 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사업자는 부속사업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별첨2에 제시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보증금 및 납부방법)

- ① 회사와 부속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이행보증금 및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계약이행보증금은 총 계약금액의 일백(100)분의 일십(10)이상으로 하며, 사업자는 회사에 계약체결 시 현금이나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이행 보증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계약종료일 이후로 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회사에 귀속된다.
- ③ 임대보증금은 총 계약금액의 일백(100)분의 일십오(15)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도 사업의 성격상 현금납부가 어려울 경우 회사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자로부터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계약 체결부터 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회사에 명도 및 원상회복할 때까지 발생하는 해당 계약에 따른 사업자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 ④ 사용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고려한 계약이행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을 산정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반환 또는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3조(보증금의 면제)

- ① 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나. 제20조 제1항 가호부터 다호까지의 해당하는 경우
 - 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제휴사업 등의 경우
 - 라. 사용료를 일시에 선납(또는 연납)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
 - 마. 기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의 경우
- ② 제1항 각 호에 근거하여 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사업종료 시 원상회복 등에 드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로 별도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24조(보증금의 반환)

- ① 임대보증금(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보험증권)은 해당 계약의 종료 후 목적물의 반환 또는 원상회복이 완료된 경우에 반환하며, 반환 및 원상회복 당시 미변제 채무가 있는 경우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 의사표시 없이 해당 임대보증금(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보험증권)에서 회사에 수입 조치하고, 잔여액은 사업자에게 반환한다.
- ②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미변제 채무 전부를 청산할 수 없을 경우, 사업자는 회사에 그 부족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의 원상회복 미실시로 회사가 원상회복을 실시한 경우, 회사는 해당 원상회복 비용을 차감한 임대보증금(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보험증권)을 사업자에게 반환한다.
- ④ 사업자가 회사에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사업자에 관한 보증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5조(사용료 산정방식)

- ① 회사는 사용료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가. 사업자가 입찰 참가 시 제시한 제안가격 기준
 - 나. 정액사용료 방식
 - 다. 절충방식(기본보장금을 적용한 매출수수료방식)
- ② 회사는 사업자 선정 시 사용료 산정 방식을 미리 정하여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회사와 사업자가 제1항 다호의 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매출액에 대한 투명성을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사용료 납부방법)

- ① 사업자는 부속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사용료를 회사의 청구일로부터 일십오(15)일(납부기한은 사업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일이 은행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업무일로 한다.(단, 사업자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그 납부일이 은행 휴무일 때는 그 전 은행 업무일로 한다.)
- ② 제25조 제1항 다호의 절충방식에 의한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는 회사의 청구일로부터 일십오(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일이 은행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업무일로 한다.(단, 사업자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그 납부일이 은행 휴무일 때는 그 전 은행업무일로 한다.) 또한 계약당사자는 기본보장금을 초과하는 매출 수수료를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월·분기 또는 년 단위로 정산해야 한다.
- ③ 사업자가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 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체료와 관련된 사항은 제29조에 의거한다.
- ④ 사업기간 중 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운영을 중지한 경우도 사용료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 시까지 해당 목적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⑤ 사업기간 중의 기 사업자가 프로모션 및 단기행사를 실시할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는 사업자에게 별도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시설관리유지비)

- ① 사업자는 부속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한 전기, 수도 등의 시설관리유지비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유지비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또는 협약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전기사용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모자분리를 한 사업자는 사업자와 한국전력공사간의 "전기사용신청"에 따른다.
- ③ 사업자가 시설관리유지비를 납부기한 내 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체료와 관련된 사항은 제29조에 의거한다.

제28조(손해보험의 가입)

회사가 부속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의 경우, 사업자는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운영개시일 칠(7)영업일전까지 회사에 손해보증증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연체료)

사업자가 회사에 사용료, 계약이행보증금, 임대보증금, 시설관리유지비 등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일십오(15)%의 연체료를 일할 계산하여 가산하며, 연체료는 체납사용료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의 관리 및 운영

제30조(사업기간)

- ① 사업자의 사업기간은 오(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의 목적, 성실, 규모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십(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 ② 사업자가 해당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 또는 시스템 구축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사업 준비 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사업 준비 기간 동안 사용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31조(업종제한)

회사가 부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역구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종 및 품목의 영업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안정상 위험요소가 있는 화공약품, 석유, 가스제품 등의 업종
2. 공기오염, 소음, 매연, 악취 등을 유발하는 환경저해업종
3. 미풍양속, 역구내 질서 및接客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종
4. 직접 가스, 유류 등 화염이 발생하는 기구를 사용하여 조리를 하여야 하는 업종
5.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종
6. 상품 성질상 임대면적 외 상품진열 등으로 인하여 시민통행에 지장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업종
7.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를 요하는 업종
8. 기타법령 등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업종 및 이용승객의 안전 등 회사에서 필요성을 인정하여 금지를 요하는 업종

제32조(양도 및 전대제한)

사업자가 부속사업 목적물을 다시 대여하거나 권리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단, 일괄위탁 또는 운영관리상 필요에 따라 일(1)회에 한하여 전대를 승인할 수 있다.

제33조(화재예방 등)

- ① 사업자는 사업공간에 대하여 소방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화재예방 시설 및 설비를 구축하고 소화장비를 비치·점검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화재 및 안전과 관련된 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사업자는 역사 내에서 화재 및 그 밖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해당역 또는 관할 기관에 신고하고, 사업자의 영업에 우선하여 이용승객 대피 유도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신속히 대처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화재 등 긴급한 경우 사업자의 부재시라도 사업공간에 대하여 안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사업자는 회사 직원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가 사업공간 내 각종 시설의 정기·안전점검, 계약의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사업공간 내에 출입할 수 있게 협조하여야 하며, 개선 및 시정사항은 사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사업자가 운영하는 점포(임대상가, 매표편의점 등) 중 계약전력이 20kw 이상인 점포의 경우, 사업자의 비용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4조(관계법령의 적용)

회사가 승인한 업종에 대하여 정부기관 및 서울시 등의 개선요구 및 제법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 사업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지도점검)

- ① 회사는 부속사업 관리에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첨3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지도 점검하고 점검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 등에게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1. 부속사업 계약의 이행상태
 2. 도시철도 안전과 관련한 사항
 3. 도시철도 이용 시민으로부터 제기된 민원관련 사항
 4.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사가 요구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회사는 각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주의환기 또는 현지시정
 2. 서면경고 이(2)회
 3. 위약제제금(200,000원) 부과

(위약제제금 미 납부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 반환 시 해당금액을 공제함)

제36조(위약제제금)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여 제35조 제2항 제2호의 서면경고를 이(2)회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사업자에게 위약제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계약면적 외 상품을 무단적치 또는 진열한 경우
2. 제31조, 제32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3. 제35조 제1항의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② 단, 서면경고 이(2)회 및 위약제제금 부과는 회사의 서면경고일로부터 일(1)년단위로 갱신한다.

제3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삼(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2. 회사의 승인없이 사업 목적물을 공동운영, 전대, 양도, 위탁하였거나 담보설정을 하였을 때
3. 사업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4. 사업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문제로 인하여 영업을 불가능한 경우
5. 해당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한 회사의 서면경고를 해당 건당 삼(3)회 이상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자가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7. 사업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업종 및 취급상품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8.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본 사업의 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사업자가 계약서에 약정한 책임과 의무 및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② 사업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삼(3)개월 전에 서면으로 회사에 해지 통지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2조 2항의 계약이행보증금은 회사에 전액 귀속되고, 사업자가 제39조에 따라 회사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로서 회사의 사업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잔여손해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제2항에 의한 사업자의 중도해지 또는 사업자 귀책에 의한 계약해지로 인하여 다시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변경, 회사의 업무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38조(계약의 종료 및 원상회복)

- ① 계약 종료 시 사업자는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원상회복하여 회사에 명도해야 한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명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는 사업자에게 명도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회사는 이를 검토하여 원상회복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명도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계약이 소멸된 후에도 사업자가 소유물품 등을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는 이의 반출, 보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 ④ 사업자 및 제32조에 의하여 전대를 받은 자는 명도 시에 회사 또는 회사와 부속사업 계약을 체결한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권리나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

제39조(손해배상)

- ① 사업자는 법령위반, 계약위반, 사업자 또는 사업자 종업원 등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②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중도해지 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경우 사업자의 명도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명도지연 또는 거부로 인한 손해예정액은 회사가 지정한 명도일 다음 날 부터 사용료 일할계산방식으로 산정한다.

제40조(비밀유지)

- ① 회사와 사업자는 계약 유지되는 동안과 계약이 종료나 해지 및 해제된 후에도 계약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어떠한 자에게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제1항에 의한 제한은 아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
 3. 재판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4. 계약 당사자의 법률자문,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41조(지적재산권)

- ① 부속사업 운영에 관련된 지적재산권(특히, 실용신안, 의장등록 등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저작권 등)의 권리 상 문제에 대한 일체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자의 책임으로 취득 또는 수수료 지불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지적재산권자와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42조(분쟁의 해결)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해결하며,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문서의 우선순위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들의 해석상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이 있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 해당 부속사업 계약서
- 부속사업규정
- 협상일지 등 기타 계약관련 문서
- 공모지침서
- 사업자 및 입찰참가자의 사업 제안서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서 약 서

본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참가 신청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OO사업자 지정의 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다는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입찰참가 신청자는 업체선정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계약 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입찰참가 신청자가 OO 사업자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공모지침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서식 3>

입찰참가 신청자 현황

상 호		대 표 자	성 명	
법인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본 사		
업 태		사 업 장		
종 목				
주 요 제 품		설 립 일 자		
납 입 자 본 금	백만원	결 산 일		
총 자 산	억원	주 거 래 은 행		
매 출 액	억원	종 업 원 수		명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	기간			
	사유			
법인 연혁				

- ※ 총자산 및 매출액은 가장 최근의 회계 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최근 1개년치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첨부)
- ※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란은 최근 3년 이내 제한·정지된 실적기간 및 사유를 기재함
- ※ 법인연혁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 투자 등 주요 특기 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함.

<서식 5-1>

(입찰
계약이행) 보증금납부서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시	20 . . . :
건 명		납부일시	20 . . .
보증기간	20 . . . ~ 반환사유 발생시		
보증금액	금 원정 (₩)		
납부방법	현금입금(신한은행 140-008-424782)		

위의 금액을 (입찰·계약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오며 반환사유발생시
별첨계좌입금거래약정서에 의하여 반환하여 주십시오.

20 . . .

상호및대표자	(인)	전 화 번 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첨부 : 입금증 1부, 계좌입금거래약정서 1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귀하

<서식 5-2>

계좌입금거래 약정서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귀하

귀 당사와 계좌입금 거래함에 있어 다음의 계좌입금 약정에 따라 거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상 호 :

사용인감대조필	
---------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 계좌입금 거래은행

거 래 은 행	
예 금 종 류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명	
계좌입금 방법	당좌이체, 온라인입금, 지로입금, 우편대체 (희망하는 이체방법에 ○표)

【계좌이체 약정】

- (계좌의 조정) 채권자 거래은행 및 예금종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임의로 선정합니다. 다만, 당사의 사정에 따라 입금방법등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권자와 사전협의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차감계산) 당사가 지급할 금액에서 당사가 수납할 유보금, 연체료등과 채권자가 부담할 송금수수료 및 통신료는 지급할 금액에서 우선 공제한 후 채권자 계좌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 (계산승인) 채권자가 계좌에 입금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입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에 그 구체사실을 통보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10일이 경과하여도 이의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입금금액 수령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면책)
 - 본 약정서에 명시된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에 의하여 대가를 계좌입금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사는 일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채권자가 본 약정에 명시된 약정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당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신고사항의 변경)
 - 본 약정서에 기입된 주소, 예금주명, 계좌번호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당사에 신고하여 계좌입금에 틀림이 없도록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전항의 신고전에 신고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지) 본 계좌입금 거래는 채권자 또는 당사의 사정에 따라 서면통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해지 통보는 당사가 서면 접수후 승인한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기타) 본 약정의 체결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첨2. 계약체결 시 준비 서류

※ 준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통장사본	1부
6. 거래처 정보신고서(당사 서식)	1부
7. 계약이행보증증권 또는 현금	1부

